

2018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 모집

- 귀농연수생 모집 -

농촌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, 경영·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

I. 추진방향

- 우리 지역에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종사를 위하여 지역 대표 선도 농가의 농장에서 영농기술 전수
- 연수희망자 또는 선도농가의 접수·선정→연수 대상자와 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 후 현장실습교육 추진
- 월 단위 작업 계획 수립 후 실행 시 문제점, 해결방안 등을 기록·공유하여 선도농가의 노하우 및 코칭,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사업 진행 상황 확인 및 점검, 지도를 통한 농촌 정착 길잡이 역할 수행

II. 사업추진계획

- 사업 추진기간: 2018.05.~09.
- 모집홍보기간: 2018.04.09.(월)~모집종료 시 까지
- 신청기간: 2018.04.16.(월)~04.20.(금)
- 신청장소: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자원담당
- 사업문의: 담당자(지방농촌지도사 김도훈, ☎760-7723)
- 모집인원: 귀농연수생 2명
- 신청자격

【 귀농연수생 】

-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,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시군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(귀농인) 또는 만 40세 미만 창·장년층
 -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·귀촌인을 선정

□ 제출서류

【 귀농연수생 】

- ▶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 - * 시스템에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 필수
- ▶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
□ 운영방법: 귀농인이 지역의 선도농업인,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농가·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(WPL)·농업마이스터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

- (필수)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
- (선택) 시군센터 주관 오리엔테이션, 간담회, 평가회, 자율학습조직, 습득기술의 자가 영농 적용실습 등
- 귀농인 연수작목별 현장실습기간 등 탄력적 운영(3~7개월, 연간 총 800시간)
 - 자가영농 실습인정(월 80시간 이내), 주작목(감귤)+부 작목(채소) 연수가능, 선도농가 및 귀농연수생 복수지원 가능, 자가영농실습 결과 온라인 실습보고서 작성
 - * 귀농연수생의 자가영농지에 대한 실습은 **선도농가와 협의하여 80시간 범위 내**에서 연수시간에 포함 가능(단 실습내용을 LMS에 반드시 등록)
 - * 자가영농지 실습은 매달 현장실습 총 연수시간의 50%만 인정함 [ex. 4월 한달 동안 10일(80시간) 연수 시 자가영농실습 40시간 인정]
 -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 매칭시 학습계약 및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사전 워크숍 등을 지원할 수 있음
- 귀농연수생 온라인시스템 운영(학습관리시스템(LMS) 활용)
 - 귀농연수생은 시스템 활용 현장실습보고서(월 1회 이상) 작성필수
 - * 미작성자 연수비 지급불가(불가피한 경우 수기작성 가능하나 추후 반드시 시스템 등록)
 - * 현장실습보고서 작성 우수자에게 귀농창업교육 대상자 선발 및 귀농창업자금 배정 시 가점부여

- 현장실습교육 이해관계자 워크숍(설명회) 실시
 - 사업 참여자(선도농가, 연수생 등 포함) 또는 선도농가와 귀농 연수생 매칭 시 사전 워크숍 등
 - * 현장실습교육 운영 관리방안, 강사풀은 청에서 협력

□ 교육훈련비 및 연수수당 지급

【 교육훈련비 】

- (지급대상) 현장실습교육 귀농연수생
- (지원금액) 월 80만원 한도(3~7개월간)
- (지원조건) 매월 10일(1일 8시간)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,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
- * 10일 미만 연수 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10일 이상 연수 시에도 연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
- *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(8시간 기준): 4만원(교통비, 식비 포함)

※ 귀농연수생에 대한 1일 지급단가(8시간 기준): 4만원(식비, 교통비 등)
 예시 1) 4월 한 달 동안 20일(160시간) 이상 연수 시: 귀농연수생(80만원), 선도농가(40만원)
 예시 2) 4월 한 달 동안 15일(120시간) 연수 시: 귀농연수생(60만원), 선도농가(30만원)
 예시 3) 4월 한 달 동안 10일(80시간) 미만 연수 시: 귀농연수생(0만원), 선도농가(0만원)

- (1일 교육시간 한도) 8시간
- (신청방법) 귀농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연수약정서(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), 출근부(사본), 교육훈련비를 입금 받을 통장 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를 제주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함
- (지급시기 및 방법)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훈련비 청구에 따른 귀농연수생의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근무상황 현장 확인을 거쳐 귀농연수생의 신청을 받은 후 교육훈련비를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